

2021년 3월 29일 개정판

# 이 사 회 규 정

**LS** 일렉트릭 주식회사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LS 일렉트릭주식회사 이사회(이하 "이사회"라고만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이 규정 제 14 조에 열거된 부의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 규정 제 14 조에서 이사회에 부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 ④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被傭者)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이사는 3 개월에 1 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2 장 구 성

제 4 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제 5 조 (의장)

-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 ② 위 ①항에 따라 선임된 의장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 26 조 ②항에 정한 순서에 준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동일 직급의 이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에서 이사회가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감사위원회의 보고)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관계인의 의견 청취)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 3 장 회 의

### 제 8 조 (종류)

-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 이사회는 년 4 회 개최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9 조 (소집권자)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의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5 조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10 조 (소집절차)

- ① 이사회는 의장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일 12 시간 전에 이를 각 이사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 소집한다. (2013.03.22 개정)
-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제 11 조 (의사의 진행)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며, 특정의 이사를 지정하여 의사의 진행을 위임할 수 있다.

#### 제 12 조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2013.03.22 개정)
- ②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2.03.16 개정)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 제 13 조 (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이사회 결의로써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하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기타 이사회 결의로써 그 설치를 결정한 위원회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각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2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가 되도록 하고

④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상법 제 393 조의 2 제 5 항에 따르고, 이 규정을 준용한다. 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 14 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상법 및 정관상의 이사회 결의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사전승인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공동대표의 결정
6.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및 폐지
8.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실권주, 단수주 처리
9.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발행
10. 사채의 모집, 발행 (2012.03.16 개정)
11. 전환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1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13.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의 결정
14. 준비금의 자본전입

15.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2012.03.16 개정)

16. 이사의 경업 승인 및 개입권의 행사

17. 명의개서 대리인의 지정

18.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결정

19. 삭제 (2013.03.22)

20.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설치의 경우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21. 위원회 결의에 대한 재의결

22. 간이합병, 소규모합병의 결정

23.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

2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취소

25. 중간배당의 결정

② 주주총회 상정안에 관한 사항

1. 영업의 전부,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의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3. 영업 전부의 양수 또는 회사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일부의 양수

4. 주식배당

5. 자본감소
6. 배당가능이익 범위내 주식소각
7.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을 통한 완전모회사, 완전자회사 설립
8. 정관변경안
9. 이사 보수안
10.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안 (2013.03.22 개정)
11.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12. 주식의 액면미달의 발행
1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5.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

③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中 1~7 항에 적용되는 기준 재무제표는 연결기준 재무제표임 (2013.12.11 개정)

1.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출자 또는 출자 지분 처분 (2013.12.11 개정)
2.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이행보증 및 납세보증 제외) (2013.12.11 개정)
3.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채무인수 및 면제 (2013.12.11 개정)

4. 자기자본의 5% 이상의 신규 시설투자 또는 시설증설 (2013.12.11 개정)
5. 자기자본의 5% 이상의 장기차입 (2013.12.11 개정)
6. 삭제 (2013.12.11)
7. 자산총액의 2.5% 이상의 유형자산 취득 및 처분 (2013.12.11 개정)
8. 자산재평가
9. 자기주식의 처분 및 취득
10. 공개매수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1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7 조의 8 에서 규정한 대규모 내부거래

④ 중장기전략 및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1. 전략적 사업방향
2. 당년도 업적평가 및 차년도 사업계획, 목표합의

⑤ 인사관련 사항

1. 임원에 관한 인사 및 보수 (2016.03.18 개정)
2. 재무담당 최고임원의 선임

⑥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5 조 (위임)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 할 수 있다.

제 16 조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그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17 조 (사무국)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下技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집통지,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 이사회의 의사록 작성 및 부의안건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18 조 삭제 (2016.03.18)

제 19 조 (경영위원회) 대표이사는 업무집행을 위해서 경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016.03.18 개정)

#### 제 4 장 기 타

제 20 조 (전문가의 조력) 이사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2021.03.29 개정)

##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25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개정일) 이 규정은 1998년 4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개정일) 이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개정일) 이 규정은 1999년 2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개정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개정일) 이 규정은 2000년 4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개정일) 이 규정은 2000년 5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개정일)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개정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개정일) 이 규정은 2001년 7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개정일) 이 규정은 2001년 1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개정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개정일) 이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개정일) 이 규정은 2004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일) 이 규정은 2004 년 12 월 24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일) 이 규정은 2006 년 8 월 1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일) 이 규정은 2007 년 3 월 10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일) 이 규정은 2012 년 3 월 16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일) 이 규정은 2013 년 3 월 22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일) 이 규정은 2013 년 12 월 1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일) 이 규정은 2016 년 3 월 18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일) 이 규정은 2020 년 3 월 24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일) 이 규정은 2021 년 3 월 29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